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012호

제출년월일 2022. 8. . 제 출 자 세무1과장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하며,
- 전자고지 활성화 및 지방세 납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지방세 감면 사항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 나.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 연장 및 조문 정비 (안 제2조)
- 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문 삭제(안 제3조)
- 라. 지역특산물생산단지 재산세 감면 적용 부동산 취득기한 연장 및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5조)
- 마.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재산세 감면 적용 부동산 취득기한 연장(안 제7조)
- 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안 제9조)
- 사.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세액공제 금액 확대(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2. 4. 20. ~ 5. 10. (20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분석 : 원안동의
-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3) 관계부처
- 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나) 경기도 자치행정국 세정과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조세특례제한법」에"를 "등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그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배우자 또는 그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를 먼저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6 초과 0.1 이

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150원"을 "8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0원"을 "1,6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소관 실·과·소		세무1과
입	실·과·소장 성 명	세무1과장 오 미 선
안	팀 장 직위·성명	세정팀장 이 준 영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세무주사 황 미 화(☎2685)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김포시 시세의 감면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

혅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 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장 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 6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 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 라 한다) 중 어느 하나 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조(목적)
<u>등에</u>

정

아

개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 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 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지 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4항에 따 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 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 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 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 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 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그 장애인 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장 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그

- 1.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일 것
- 2.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의하여 그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그 장애인의 직계혈족의배우자이거나 그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의 비우자이거나 그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조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일 것
- 3.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

-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 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를 먼저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 람

<u>〈삭 제〉</u>

② ~ ④ (생 략)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 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 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 업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 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 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 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 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1. · 2. (생략)
-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 <u>항제1호</u>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 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 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 려는 자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② ~ ④ (현행과 같음)〈삭 제〉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딘	사지에 대한 감
면)	
	2023년 12월 3
<u>1일</u>	
1. · 2. (현행과 같음)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u> </u>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 ⁼	주자에 대한 감
면)	

률」에 따른 농공단지내에서 휴업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폐업(「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날,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 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고, 과세기준일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 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 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2023년 12월 31일</u>
, -110 - (기기 - 11 - 11 - 11 - 11 - 11 - 11 - 1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u>2023년 12월 31일</u>
제1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①
U TII U

- 1.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 장당 <u>150원</u>
-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 ② (생략)

1
<u>800원</u>
2
<u>1,600원</u>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발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37호, 2021. 8. 17., 타법개정]

-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2020.
 - 1. 15., 2021. 6. 8.>
 -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 · 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 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2021. 6. 8.〉
 -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하다.
 -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31., 2016. 12. 27.〉
 -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 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 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 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 12.27.,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9., 2017. 7. 26.〉
-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12. 27., 2015. 12. 29., 2020. 1. 15.〉
-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 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 (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 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 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6. 12. 27., 2018. 12. 24.〉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24., 2021. 12. 28.〉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 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31., 2018. 12. 24., 2021. 12. 28.〉
-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 2. 삭제 <2021. 12. 28.>

-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건축공사 착공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1. 12. 28.〉
 - ② 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1. 12. 28.〉
 -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2021. 12. 28.〉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70호, 2022. 1. 25., 타법개정]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 4. 17., 2012. 12. 21., 2015. 12. 31., 2016. 12. 30., 2018. 12. 31.〉

- 1. 삭제 <2015. 12. 31.>
- 2. 삭제 <2015. 12. 31.>
- 3. 삭제 <2015. 12. 31.>
- 4. 삭제 <2015. 12. 31.>
-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5. 12. 31., 2020. 1. 15.〉
-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 1. 15.〉
- 1. 장애인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 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1. 15.〉
- 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 15.〉
- ⑥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31., 2016. 12. 30., 2020. 1. 15.〉
-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 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4. 6.>
 -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② 법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이 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③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 1. 15.〉
 - 1.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 2. 국가유공자등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3.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형제자매
 -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수 있다. 〈신설 2020. 1. 15.〉
 - ⑤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9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국가유공자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 15.>
 - ⑥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그 날부터 해당 자동 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요청한 경우. 다만, 자동차를 매도(賣渡)하지 아니하고 반환받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자동차가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 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한 경우
-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17호, 2021. 8. 17., 일부개정]

-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 ② 삭제 <2017. 2. 8.>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 ⑦ 삭제 <2021. 7. 27.>
 -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17. 12. 19.>
 -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2.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5.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364호, 2022. 1. 25., 일부개정]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하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4. 13.>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 은 사람
 -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 하인 사람

-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5.] [보건복지부령 제871호, 2022. 3. 15., 일부개정]

-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 2. 1., 2013. 1. 25., 2015. 8. 3., 2016. 6. 30., 2016. 12. 30., 2019. 6. 4., 2021. 6. 4.〉
 -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 2.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 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5. 11. 18., 2019. 6. 4.〉
 -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6. 4.〉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2., 2010. 3. 19., 2011. 2. 1., 2019. 6. 4.〉

- 제3조의2(진료기록 열람 등의 동의) ①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같은 조 제7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1. 6. 4.〉
 - ②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진료에 관한 사항은 진료기록 자료, 검사결과 자료 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관련 기록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 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 (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 6. 4.〉
 - ② 장애인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 이라 한다) 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등록 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6. 30., 2021. 6. 4.〉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 ④ 장애인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 제5조(등록증 서식 등) ① 등록증의 재질·규격 및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표기사항의 위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9. 6. 4.>
 - 1. 재질 : 플라스틱
 - 2. 규격: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
 - 3. 표기사항 : 장애인의 성명·주소·사진·주민등록번호·장애종류·장애정도·등록일, 보호 자 연락처, 기재사항 변경란, 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직인.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 발급기관의 직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인쇄함으로써 날인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
- 제6조(장애 정도의 조정) ① 장애인은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 정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6. 4., 2021. 6. 4.〉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 정도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6. 4.>
 -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6. 4.〉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2., 2010. 3. 19., 2011. 2. 1., 2019. 6. 4.〉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 정도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6. 4.>
- 제7조(장애 상태 확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 상태에 맞는 장애 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6. 4.〉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 호서식의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 6. 4.〉
 - ③ 장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 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3. 12., 2019. 6.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1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 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 1. 등록기준지
- 2. 성명 · 본 · 성별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5.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19조의4 삭제 <2020. 2. 18.>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037호, 2020. 2. 18., 제정]

-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가공품 (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전문판 매점의 설치·운영
 - 2.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 3.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 4.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참고 2

현행 조례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0. 7. 1.]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710호, 2020. 7. 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김포시 시세의 감면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감 면

-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3.7, 2019.4.17., 2019.7.26.〉
 - 1.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일 것
 - 2.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의하여 그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그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이거나 그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일 것 〈개정 2020.7.1.〉
 - 3.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7.1.〉
 - ③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8.3.7., 2020.7.1.>

-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신설 2018.3.7〉
-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신설 2018.3.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1.〉
-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제11 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 9.4.17〉
-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

- 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공제대상금액"이라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 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④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4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7.1.〉
-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본문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본문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의 "3년"을 "6 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내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폐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날,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제10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①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 3년의 기간내에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특1등급 관광호텔로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 1.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1등급 관광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 3.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
- 제12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 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김포시 또는 김포시와 연접한 구(자치구를 말한다)·시·군 안의 지역일 것
 -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 제1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 2. 지방교육세의 경우 : 가장 후순위 공제

제3장 보 칙

제14조 삭제 <2020.7.1.>

제15조 삭제 <2020.7.1.>

제16조 삭제 <2020.7.1.>

제17조 삭제 <2020.7.1.>

- 제18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4조, 제9조에 따른 감면
- 제1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 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 지 관할 시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

지 관할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2020.7.1.>

제21조 삭제 <2020.7.1.>

부칙 〈조례 제1710호, 202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2조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제6조에 따른다.